햇살론15에 따른 추가약정서

본인은 귀행과 체결한 년 월 일자 『대출거래약정』(이하 "대출약정"이라 한다)에 추가하여 귀행 및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(이하 "기금")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제1조(보증부대출) 본인이 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기금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한 대출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.

제2조(대출이자 및 보증료의 계산) ①본인이 귀행 및 기금에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대출원리금과 보증료를 합한 총 상환금은 대출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율(%)과 보증료율(%)을 합한 율(%)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②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이 귀행에 매월 납입하여야 할 대출원리금과 보증료를 합한 월상환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하기로 한다.

제3조(보증료 납입) 본인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매 회차별 대출원리금 상환시 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료를 동시에 납부하기로 한다.

제4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2항제2호에 불구하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채무자는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.

제5조(상환유예 및 만기연장) ①본인은 정상상환하고 있는 중에 실직,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행에게 최대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.
②상환유예 기간 중에는 대출이자와 보증료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된다.
③귀행이 상환유예 결정을 통보한 때에는 기금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더라도 기금의 신용보증 조건은 해당 상환유예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.
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귀행 사이에 상환유예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를 수 있다.

제6조(성실상환자 금리인하) ①대출을 성실상환한 사람에게는 신용보증 기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료율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.
1. 신용보증 기한이 3년인 경우 1년마다 3.0%포인트
2. 신용보증 기한이 5년인 경우 1년마다 1.5%포인트

②제1항의 "대출을 성실상환한 사람"이란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년 경과시점부터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, 감면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.
③제2항의 "매 1년 경과시점"을 계산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은 제외한다.

제7조(추가약정의 효력) 이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사항은 대출약정, 본인과 기금이 체결한 보증거래약정 및 귀행 또는 기금의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

제8조(보증료 자동이체) 본인은 대출금 이자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, 보증료를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 하여 줄 것을 신청 하며, 보증료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출은행의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기로 한다.

제9조(기타) 이 추가약정서는 본인과 귀행 및 기금을 대리한 귀행이 체결한 것이다.

본인은 귀행과 『대출거래약정』을 체결함에 있어, 이 추가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본인(대출받는자) 성 명 : (인)
생년월일 :
주 소 :

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및 은행 귀중

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5-16-0314(1-1) (2021.07 제정)
(보존년한 : 완제일로부터 5년)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-약관-431 호(2021.06.15)

하나은행